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6. 20.(금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

(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)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28호

나. 제 출 자 : 도병두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
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최근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있는 바, 산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(안 제5조)

라.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관련 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
마.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(안 제8조)

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산림보호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금천구 관내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3)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(안 제5조)

-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·시행함을 규정함

4)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관련 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
- 효율적인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해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.

5)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(안 제8조)

- 금천구민, 관내 기업,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6)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산불예방을 강화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감시 및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산림보호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20309호, 2024. 2. 13., 타법개정]

제3조(산림보호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1.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
2.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·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
3.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·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
4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